신지원 2018 기업보험심사역 개정업데이트(18.10.05)

※ 기본서 개정(2018.6)을 반영한 '기업보험심사역(신지원)' 업데이트 자료입니다.

※ 해상보험(4과목)의 경우 신규수록과 범위 제외가 혼재하여 복잡한 상황인데, 이번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⑴ S.G.Policy(구해상보험증권)와 MAR Form(신해상보험증권)의 전체약관 신설
⑵ 적하보험에 추가로 첨부하는 부가위험약관, 기타특별약관, 항공적하약관 신설
⑶ 선체보험에 추가로 첨부하는 특별약관 신설

※ 기본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'다수의 예제(4지선다 포함)'를 수록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. 아울러, 사정상 이번 개정업데이트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-기출유형계산문제(공통)-

■ **32페이지: 63번 해설 수정** (2018.6 기본서 개정사항)

수정 후
*주1: 화재 5%, 해상 3%, 자동차 2%, 보증 15%, 특종 5%, 수재 ~~3%~~ 6%
*주2: (이하 동일)
[2016개정] (내용 동일)
[2018개정] 수재보험 3%→6% (2017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)

*42페이지 84번 해설도 동일하게 수정함

■ **32~33페이지: 64번, 65번 삭제 그리고 신규출제** (2018.6 기본서 개정사항)

[신규문항]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수입보험료 100억원, 경과보험료 80억원, 지급보험금 60억원, 사업비 30억원
- 손해율은 발생주의에 입각하며,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실무방식에 입각함.

	합산비율	언더라이팅 평가
①	97.5%	양호
②	97.5%	불량
③	112.5%	양호
④	112.5%	불량

(답: ④)

구분	손해율	사업비율	합산비율
현금주의	60/100=60%	30/80=37.5%	97.5% (양호)
발생주의	60/80=75%	30/80=37.5%	112.5% (불량)

*사업비율 계산방식 변경(2018.6 개정사항)

-기출유형계산문제(기업전문)-

■ 67페이지: 48번 → 삭제 (2018.6 기본서 개정으로 인한 범위 제외)

■ 94페이지: 111번 → 삭제 (2018.6 기본서 개정으로 인한 범위 제외)

■ 97페이지: 48번 → 삭제 (2018.6 기본서 개정으로 인한 범위 제외)

-본문-

-1과목 장기·연금보험-

■ **465페이지: 11번 문항 – 아래 해설 교체 ('화보법 개정(2017.10.19)'에 따른 내용 교체)**

※아래 내용은 '공통 3과목 손해보험 언더라이팅'에서의 개정반영 내용과 동일함

수정 후

※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

⑴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

연면적 1,000m^2	바닥면적 2,000m^2	연면적 3,000m^2
국유건물(관공서 등)	학원	병원, 공장, 관광숙박업, 학교, 공연장, 방송국, 숙박업, 대규모점포 등[주1]
	일반음식점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게임장 등	
	[신규] 공중목욕탕, 영화관	[신규] 도시철도역사 및 시설
[신규] 실내사격장 (면적구분 없음)		
16층 이상의 아파트, 11층 이상의 일반건물		

*주1: 3,000m^2 이상에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: 도시철도역사 및 시설, 대규모점포, 숙박업(나머지는 모두 연면적으로 기준으로 함).

⑵ 담보범위: 화재보험 보통약관상의 손해로 입힌 타인에 대한 신체손해와 대물손해를 보상함.

대인손해[주1]			대물손해(신설)
사망	부상	후유장해	
최고 1억5천만원 (최저 2천만원)[주2]	최고 3천만원 (상해 1급~14급)	최고 1억5천만원 (장해 1급~14급)	1사고당 10억원

*주1: 대인손해의 보상한도는 '자동차보험 대인배상1'과 동일함.
*주2: 사망시 실손해액이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2천만원을 정액지급함.

[예제 신설]

1.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 특별약관에서 타인의 사망에 대해, 최저 (　　)에서 최고 (　　)을 보상한다.
→**답: 2천만원, 1억5천만원**

2. '화보법'상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은 타인에 대한 신체손해를 배상하므로 대물배상은 하지 않는다. [O, X]
→**답: X** (1사고당 10억원까지 대물손해를 보상한다. 2017.10.19 개정시 신설됨)

3. 연면적 3,000m^2 이상의 공중목욕탕과 영화관은 특수건물에 해당된다. [O, X]
→**답: X** (바닥면적 2,000m^2 이상이다)

4. 도시철도역사 및 시설은 관공서에 해당되어 연면적 1,000m^2 이상일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된다. [O, X]
→**답: X** (도시철도역사 및 시설은 바닥면적 3,000m^{2}이상일 경우 특수건물이 된다).

5. 실내사격장은 면적을 불문하고 특수건물에 해당된다. [O, X]
→**답: O** (실내사격장은 면적 구분없음).

■ **500페이지: 패키지보험 제4부문 용어변경 (♣개정 반영)**

모든 재산위험을 담보			배상책임손해위험을 담보
			~~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over~~ General Liability Cover
			제4부문 담보 (Section Ⅳ)

*패키지보험의 4부문: PAR Cover,, MB Cover, BI Cover, **GL Cover**

-2과목 특종보험-

■ 592~594페이지: 금융기관종합보험 일부내용 삭제 (♣개정으로 인한 범위 제외)

P592

② 담보기준: BBB는 사고발견기준이다(보충문제 1)
㉠ (내용 동일)
㉡ (내용 동일

~~(3) 담보조항: 보충문제2, 3~~

~~(4) 면책조건: 보충문제 4~~

~~(5) 지급보험금: 보충문제 5, 6~~

(7) 보험인수를 위한 전제조건: 보충문제 7

P593
보충문제 2 → 삭제
보충문제 3 → 삭제

P594
보충문제 4 → 삭제
보충문제 5 → 삭제

■ 600~608페이지: Topic 10 종합보험– (1) 패키지보험→ 전체 삭제 (♣개정으로 범위 제외)

P600 → **전체 삭제**

P601 → **전체 삭제**

P602
보충문제1 → 삭제

■ 626페이지: 실전예상문제 20번 → 삭제 (♣개정으로 인한 범위 제외)

-3과목 배상책임보험 (없음)-

-4과목 해상보험-

■ 759페이지: 이해더하기 수정 (용어변경 및 종류추가) (♣개정반영)

P759~760

[이해더하기] *해상보험의 종류

(1) 해상보험의 ~~4종류~~ 종류: 핵심문제

(2) 적하보험: (이하 동일)

(3) 선박보험( ): 보충문제 2, 3, 4
① 선체보험
② ~~선비보험~~ 선비 및 증액보험( )
③ ~~선박불가동보험~~ 불가동보험( )
④ 계선보험( )
⑤ 운임보험: 보충문제 5
⑥ 건조보험( ): 보충문제 4-1,
'건조에서 인도'까지의 육상위험 및 해상위험에 의한 건조자의 손실을 보상함
(아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국의 협회건조보험약관 내용임).
※협회건조보험약관(Institute Clauses for Builder's Risks, 1988)
⑴ 보험기간: 건조자의 시운항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까지 담보한다.
⑵ 담보위험
• 보험기간 중 잠재적하자로 불량이 된 하자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. 단, 조악한 용접으로 인한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• 보험기간 중 발생하고 발견된 보험목적물의 설계결함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보상한다. 단, 설계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• 진수실패의 경우진수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한다.
⑶ 충돌배상금의 한도는 선체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3/4을 한도로 하지만, 동 보험은 4/4를 한도로 한다.
⑷ 선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P&I위험도 일부 보상한다.
⑸ 지진 및 화산분화로 인한 멸실, 손상,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.

㉥ 전쟁 및 동맹파업보험(War & Strike Insurance)
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에 대해서는 선박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이므로,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박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.

⑦ 전쟁 및 동맹파업보험(War & Strike Insurance)
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에 대해서는 선박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이므로,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박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.

~~(4) 운임보험( ): 보충문제 5~~

(5) P&I보험(　　): 보충문제 6, 7, 8

(6) 항공보험: 보충문제 9

① 항공보험의 분류: 기체보험, 제3자배상책임보험, 승객배상책임보험, 화물배상책임보험, 탑승자상해보험, 불가동손실보험

② 기체보험

담보	면책사유
⑴ 충돌, 추락, 불시착,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한 항공기자체 손해 ⑵ 항공기가 행방불명되고 60일이 경과된 후에도 소식을 알 수 없을 때	⑴ 피보험자의 악의 ⑵ 기계적 고장에 기인하는 손해 ⑶ 항공기의 사용목적이나 지리적 제한의 위반 ⑷ 전쟁, 폭동, 노동분쟁, 원자력, 법령위반, 자연소모 등

*보험가액은 협정보험가액이며, 분손시에는 면책금액을 설정한다.

P761 보충문제 추가

4-1. 협회건조보험약관(Institute Clauses for Builder' s Risks)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① 보험기간 만료는 시운전 종료 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조악한 용접으로 인한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③ 진수실패의 경우 진수를 완료하는데 드는 실제비용을 보상한다.
④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발견된 보험목적물의 설계결함으로 인해 피보험목적물의 다른 부분에 발생한 멸실이나 손상을 보상한다. 그리고 설계결함 부분에 대한 수리나 교체비용도 보상한다.

[답: ④] 설계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부분은 보상하지만 설계하자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
P764 보충문제 추가

9-1. 항공기체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는?

①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기체의 분손
② 조종사실수로 인한 기체의 전손
③ 60일을 초과한 기체의 행방불명
④ 긴급착륙 중에 입은 기체의 분손

[답: ①] ①은 면책사유이다.

9-2. 다음 중 통상의 항공보험 종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항공 기체보험
② 항공 승객배상책임보험
③ 항공 화물화주보험
④ 항공 제3자배상책임보험

[답: ③] 항공 화물운송보험은 있어도 항공 화물화주보험은 없다.

■ **764페이지: Topic 9 전에 Topic 8-1 신설 (♣개정내용 신설)**

Topic 8-1. 구약관(S.G.Policy)과 신약관(MAR Form)

(1) 구약관: S.G.Policy에 ICC(1963)를 첨부한 약관(구증권이라고도 함)

①. S.G.Policy의 구성

㉠ 약관구성

증권의 전면			증권의 이면
본문약관	이탤릭서체약관	난외약관	특별약관
20개 세부약관 규정	부담보약관 삽입	손해방지의무 규정	ICC(1963), ITC(1888)

㉡ 약관구성의 세부내용

구분	내용
본문약관 (20개 세부약관)	모두문언약관, 여백, 양도약관, 소급약관, 출발항약관, 보험의 목적약관, 선박명약관, 선장명 및 선박명 및 변경약관, 보험기간약관, 기항정박약관, 보험평가약관, 부담위험약관, 손해방지약관, 포기약관, 보험증권 구속력약관, 보상약관, 약인약관, 소손해면책률약관, 영법준거약관, 선서약관
이탤리서체약관	포획나포부담보약관, 동맹파업폭동부담보약관, 포획나포 등 부담보준칙약관
난외약관	손해방지의무 규정

*S.G.Policy는 200년 이상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왔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1779년 양식 그대로라고 할 수 있음. 따라서 이 증권만으로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계약체결 때마다 특별약관(대표적으로 1963년 협회적하약관)을 추가하였음.

*S.G.Policy는 수많은 판례와 관습을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→ 1978년 UNCTAD의 비판→ 'S.G.Policy+ICC(FPA, WA, A/R)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→ 1982.1.1부터 신증권(MAR Form)이 사용됨.

② **본문약관**

1) **모두 문언 약관**

2) **여백**(보험계약자 기재 약관)

3) **양도약관**
보험증권을 양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양도를 인정하는 약관

4) **소급약관**(lost or not lost)
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체결이 성립됨(동 교재 p236 참조).

5) **출발항약관**(at and from)

6) **보험의 목적약관**
- 영법에서 Goods는 상품으로서의 화물을 의미하며, 선원 및 승객의 소지품이나 식량 기타 소모품을 포함하지 않는다.
- 반대의 관습이 없는 한 갑판적하나 동물은 Goods라는 명칭으로 가입할 수 없음.

7) **선박명약관**

8) **선장명 및 선박명 변경약관**

9) **보험기간약관**

위험개시(from the loading)	위험종료(safely landed)_
화물이 실제로 선적될 때 개시	안전하게 양륙될 때 종료
협회 적하약관(ICC)의 경우 위험의 개시와 종료 모두 S.G.Policy에 비해 확장됨	

10) **기항정박약관**
기항(정박)을 허용하지만, 기항은 피보험항해의 통상의 항해경로에 있어야 한다. 이를 위반시에는 위험의 변동으로 보고 보험자는 면책된다.
Cf. ICC(1963):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, 이로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.

11) **보험평가약관**
- 동 약관의 공백란에 보험가액과 보험목적의 명세를 기재하였음(과거).
- 동 약관의 공백란에 보험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미평가보험이 된다.

12) **부담위험약관**
S.G.Policy가 부담하는 피보험위험의 종류를 13개 항목 및 기타 일체의 위험으로 열거하고 있다(세부 내용은 추후 설명).

13) **손해방지약관**
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의무를 나타낸다(손해보험금과 손해방지비용의 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).

14) **포기약관**

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후에 적하에 대한 손해방지행위를 한 경우, 이는 위부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.

15) **보험증권 구속력 약관**

16) **보상약관**

17) **약인약관**
-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, 보험자는 그 대가로 위험을 부담한다는 약속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.
- 동 약관의 공백란에 보험요율을 기재함(즉, S.G.Policy에서 약인약관이 있는 보험증권의 교부는 보험료지불의 증거가 됨).

18) **소손해면책률약관**
좌초(stranding)의 경우에만 면책률과 상관없이 보상한다는 규정이다(cf. 우리나라의 경우는 '침몰·좌초·대화재(SSB)'의 경우 면책률과 상관없이 보상함).

19) **영법준거법약관**
클레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'영국의 법률과 관습'에 따른다.

20) **선서약관**

③ 이탤릭서체약관

⑴ **포획나포 부담보약관**
- 포획, 나포, 강류,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나 기도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.
-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.
- 즉, 동 약관은 S.G.Policy의 본문약관상 담보하는 전쟁, 해적, 강도 등의 위험을 면책으로 하는 약관이다.

⑵ **동맹파업소요폭동 부담보 약관**
- 동맹파업, 기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으로 한다.
- 이는 1911년, 1912년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노동쟁의가 빈번하였는 바, 선적전과 양륙 후의 적하위험이 증가되었고 이를 면책으로 하기 위한 약관임.

⑶ **포획나포 등 부담보 준칙약관**
- '포획나포부담보약관'에 대한 준칙약관이다.
- 국왕, 군주,국권찬탈자 등에 의한 강류, 억지 또는 억류 등에 발생하는 어떤 위험도 부책으로 하지 않는다.

④ 난외약관
보험증권의 좌측 난외에 손해방지약관이 인쇄되어 있음.

[예제 신설]

1. S.G.Policy는 증권의 전면에 표시되는 3개의 약관으로 구성되는데, 3개의 약관은 (　　), (　　), (　　)이다.

답: 본문약관, 이탤릭서체약관, 난외약관

2. 구증권상 포획나포부담보약관 등 본문약관에 대한 부담보약관이 기재된 약관을 (　　)라 한다.

답: 이탤릭서체약관

3. 구증권상, 보험증권을 양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양도를 인정하는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양도약관

4.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그 손해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, 계약이 성립되고 위험이 개시되는 구증권의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소급약관(lost or not lost)

5. 반대의 관습이 없는 한 갑판적하나 동물은 Goods라는 명칭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증권의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보험의 목적약관(upon any kind of Goods and Merchandise)

6. 위부를 한 피보험자가 적하에 대한 손해방지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구증권의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포기약관(Waiver Clause)

7. 구증권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증거로 기능하는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약인약관

⑤ S.G.Policy – 본문약관– '부담위험약관'

㉠ 열거된 위험의 구성: 13개 항목 및 기타 일체의 위험

<table>
<tr><td rowspan="14">담보위험</td><td rowspan="6">Perils of the sea
(해상고유의 위험)</td><td>좌초(Stranding)</td><td rowspan="10">실제부담
위험</td></tr>
<tr><td>침몰(Sinking)</td></tr>
<tr><td>충돌(Collision)</td></tr>
<tr><td>악천후(Heavy Weather)</td></tr>
<tr><td>선박의 행방불명(Missing ship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Perils on the sea
(해상위험)</td><td>화재(Fire)</td></tr>
<tr><td>투하(Jettison)</td></tr>
<tr><td>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(Barratry)</td></tr>
<tr><td>강도(Thieves)</td></tr>
<tr><td>해적(Pirates)</td><td rowspan="8">'포획나포
부담보약관'
으로,
면책되는
부분</td></tr>
<tr><td>표도(Rovers)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War Perils
(전쟁위험)</td><td>군함(Men of war)</td></tr>
<tr><td>외적(Enemies)</td></tr>
<tr><td>습격(Surprisals)</td></tr>
<tr><td>바다에서의 점유탈취(Taking at sea)</td></tr>
<tr><td>국왕, 군주, 국민의 강류, 억지, 억류</td></tr>
<tr><td>포획면허장 및 보복포획면허장
(Letters of Mart and Countermart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타 일체의 위험(All other perils)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*부담위험약관의 위험은 'Perils of the sea(해상고유의 위험)'을 하나의 위험으로 보고, 이하 12가지의 추가열거위험과 기타 일체의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.

㉡ 담보위험의 세부내용

⑴ **Perils of the sea(해상고유의 위험)**

• 해상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함(따라서 바람과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은

포함하지 않는다.
- 즉,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'풍파의 이상현상'에 의한 침몰, 좌초, 교사 등을 말함.

⑵ **Men of war(군함)**
동 위험은 전쟁위험과 해상위험의 두 가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, 해상위험에 의한 것이라면(예: 군함과 상선의 충돌) 이는 해상고유의 위험(충돌)이 될 수 있다.

⑶ **Fire(화재)**
해상위험(perils on the sea)에 속한다. 대화재는 Burning이라 함.

⑷ **Enemies(외적)**
적의 군함을 제외하고, 전쟁에 종사하는 적의 일체의 선박, 물건 및 사람을 '외적'이라 하며, 외적으로부터의 포획, 나포, 습격, 격침 등을 보상한다.

⑸ **Rovers(표도)**
해적의 일종으로 '무어인이나 아라비아인의 해적'을 지칭함.

⑹ **Pirates(해적)**
- 국제법상의 해적: 공해상에서의 약탈을 목적으로 한 각종의 폭행을 말함.
- 영국해상법상의 해적: 폭동을 일으킨 승객이나 육상으로부터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도 포함한다.

⑺ **Thieves(강도)**
폭력을 수반하는 도난을 말한다. 단, 승선자에 의한 도난은 포함하지 않는다.

⑻ **Jettison(투하)**
선외로 적하를 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건을 갖출 경우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됨.

⑼ **Letters of Mart and Countermart(포획면허장 및 보복포획면허장)**
- 포획면허장: 적의 상선을 포획할 권리를 국가가 부여한 권리면허서
- 포획면허장이나 보복포획면허장을 가지고 행하는 가해행위로부터의 위험을 담보.

⑽ **Surprisals(습격)**
- 습격은 타 선박에 대한 방화, 포격, 격침 등의 가해행위를 말하는데 포획과 같은 개념이므로 동 위험을 '습격 및 포획(surprisals and capture)라고도 한다.
- 포획(capture): 적하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말하는데, 전시 또는 평시를 불문하며 국내법상 적법여부도 불문한다.

⑾ **Taking at sea(바다에서의 점유탈취)**
- 나포(Seizure)와 같은 말이다.
- 나포는 피보험재산의 지배권(점유권)을 탈취하는 강제적 조치를 말하는데, 그 조치의 영구적 일시적을 불문하고, 적법여부도 불문하며, 폭동을 일으킨 승객에 의한 나포라도 불문한다.

⑿ **국왕, 군주, 국민의 강류, 억지, 억류**
강류, 억지 및 억류는 정치상이나 행정상의 행위를 말하며, 소요나 재판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.

⑬ **Barratry(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)**

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으로 선주나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담보한다. 이때 선원의 고의적인 일체의 부정행위도 담보위험에 포함된다.

⑭ **All other perils(기타 일체의 위험)**

- 위험약관의 마지막에 기재된 위험이다.
- 여기서 '일체의 위험'이란 보험증권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포괄책임주의가 아니라,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험과 유사한 종류의 위험을 말한다. 즉, 해상보험의 해석원칙인 '동종제한의 원칙'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.

[예제 신설]

8. S.G.Policy 본문약관 담보위험약관에서 말하는 해상고유의 위험(perils of the sea)은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. [O, X]

답: O (풍파의 이상현상에 의한 침몰, 좌초 등을 보상한다).

9. 구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 외적(Enemies)은 적의 군함을 포함하여 전쟁에 종사하는 일체의 선박이나 물건, 사람을 말한다. [O, X]

답: X (적의 군함은 제외된다)

10. 구증권에서 담보하는 해적(Pirates)위험에서, 영국해상법은 폭동을 일으킨 승객이나 육상으로부터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까지 해적에 포함한다. [O, X]

답: O

11. 구증권에서 담보하는 강도(Thieves)행위는 폭력을 수반하는 도난을 말하는데, 은밀한 도난이나 선원이든 승객이든 불문하고 승선자에 의한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. [O, X]

답: O

12. 구증권에서 담보하는 '습격 및 포획' 위험에서, 포획이란 적하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말하는데, 전시의 행위는 면책된다. [O, X]

답: X (전시나 평시여부, 적법여부는 불문한다)

13. 구증권에서 담보하는 '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'위험에서, 선원의 고의적인 일체의 부정행위는 담보하지 않는다. [O, X]

답: X (선원의 고의적인 일체의 부정행위도 담보위험에 포함된다)

14. 구증권의 담보위험약관 마지막에 기재되는 '기타 일체의 위험(All others perils)'은 열거된 이외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. [O, X]

답: X (포괄담보가 아니라 열거된 위험과 유사한 동종의 위험을 담보함을 의미한다)

[보충문제 신설]

1. 영국 해상보험법(MIA, 1906)상의 보험증권 해석에 관한 규칙의 설명 중 틀린 것은? (S.G. Policy 본문약관 12항 담보위험약관에 대한 내용)

① 해상고유의 위험(Perils of the sea)에는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.
② 도적(Thieves)이란 은밀히 절도 또는 선원이든 승객을 불문하고 승선자에 의한 절도는 포함하지 않는다.
③ 외적(Enemies)이란 적의 군함을 포함한 전쟁에 종사하는 적의 일체의 선박, 물건 및 사람을 의미한다.
④ 기타 일체의 위험(All other perils)이란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위험과 동종의 위험만을 말한다.

[답: ③] 적의 군함을 포함한→적의 군함을 제외한

2. 영국 해상보험법(MIA, 1906)상의 보험증권 해석에 관한 규칙의 설명 중 틀린 것은? (S.G. Policy 본문약관 12항 담보위험약관에 대한 내용)

① 해상고유의 위험(Perils of the sea)은 해상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만을 말하고, 바람과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.
② 해적(Pirates)은 폭동을 일으킨 여객이나 육상으로부터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를 포함한다.
③ 도적(Thieves)이란 은밀히 절도 또는 선원이든 승객을 불문하고 승선자에 의한 절도는 포함하지 않는다.
④ 기타 일체의 위험(All other perils)이란 보험증권에 열거된 위험 이외의 여하한 위험을 포함하나, 면책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.

[답: ④] 열거된 위험 이외의 위험을 포괄담보하는 의미가 아니다.

3. S.G.Policy에서 포획나포부담보위험 약관을 감안할 때, 본문약관이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위험은?

① 강도(Thieves)
② 해적(Pirates)
③ 군함(Men of war)
④ 외적(Enemies)

[답: ①] ②③④는 '포획나포부담보 약관'에 의해서 면책된다.

4. 다음 중 S.G.Policy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험은?

① 화재(Fire)
② 해상고유의 위험(Perils of the sea)
③ 도적(Thieves)
④ 폭발(Explosion)

[답: ④] '폭발(Explosion)'은 열거된 위험이 아니다.

(2) 신약관: MAR Form에 ICC(1982)를 첨부한 약관(신증권이라고도 함)

① MAR Form의 구성

본문약관	난외약관
준거법약관 타보험약관 약인약관 선언약관	중요사항약관 손해사정을 위한 지침약관 보상청구 서류에 관한 사항

② 본문약관

⑴ **준거법약관**

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 법률과 관례를 따른다.

⑵ **타보험약관**

- 동 보험증권이 다른 보험증권(해상보험 또는 화재보험 등)과 중복관계가 될 경우, 다른 보험증권의 후순위가 됨을 정하는 약관이다.

[例示1] A(동 보험), B가 중복보험일 경우,
→A는 타보험약관이 있으므로 B가 보상한 후의 잔액에 대해서 지급한다.

[例示2] A(동 보험), B, C가 중복보험일 경우(B가 먼저 보상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),
→B가 보상한 후의 잔액에 대해서 A와 C가 중복보험의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.

⑶ **약인약관**

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 합의한다(보험료의 지급을 보험자의 보상의 전제조건으로 함).

⑷ **선언약관**

동일한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복수의 보험증권이 발행된 경우, 그 중 1부에 대해 손해보상의무가 이행된 경우 나머지 증권은 효력을 상실함을 규정하고 있다.

③ 난외약관

⑴ **중요사항 약관**

- 동 약관의 주요목적은 손해방지행위를 할 것과 아울러 운송인 등이나 항만당국을 상대로 하는 클레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- 동 약관은 피보험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어 일명 Red line Clause라고 한다.

⑵ **손해사정을 위한 지침약관**

이 보험 하에서 보상청구할 멸실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, 이 보험증권이나 증명서에 명기된 보험회사가 그 대리점에 즉시 사고통보를 하고 검정보고서를 얻어야 한다.

⑶ **보상청구서류에 관한 약관**

보상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피보험자가 그 대리인들은 지체없이 모든 구비서류(보험증권, 검정보고서 등)들을 제출해야 한다.

[예제 신설]

1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은 (　　)와 (　　)의 두 가지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.

답: 본문약관, 난외약관

2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본문약관은 (　　), (　　), (　　), (　　)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.

답: 준거법약관, 타보험약관, 약인약관, 선언약관

3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본문약관 중, 중복보험시 보험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한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타보험약관

4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본문약관 중, 동일한 복수의 보험증권이 있고 하나의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한 경우 나머지 보험증권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선언약관

5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난외약관 중 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한 약관은 (　　)이다.

답: 중요사항약관

[보충문제 신설]

1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본문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선언약관(Attestation Clause)
② 준거법약관(Governing Clause)
③ 타보험약관(Other Insurance Clause)
④ 포기약관(Waiver Clause)

[답: ④] 포기약관은 S.G.Policy의 본문약관에 속한다.

2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본문약관의 준거법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결제에 관해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.
② 적하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.
③ 적하보험게약의 체결과 해지 그리고 일체의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결제에 대해서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.
④ 적하보험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법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.

[답: ①]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정산에 대해 영국법과 관례를 따른다.

3.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약관 중 보기에 부합하는 약관은?

복수의 보험증권이 발행되고 1부에 대해 보상의무를 이행한 경우, 남은 보험증권은 그 효력이 상실됨을 규정한 약관이다.

① 준거법약관(Governing Clause)
② 타보험약관(Other Insurance Clause)
③ 약인약관
④ 선언약관(Attestation Clause)

[답: ④] 선언약관을 말한다.

4. 다음의 신해상보험증권(MAR Form)의 약관 중에서, 손해방지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?

① 준거법약관(Governing Clause)
② 중요사항 약관
③ 손해사정을 위한 지침약관
④ 보상청구서류에 관한 약관

[답: ②] 신증권의 난외약관은 ②③④로 구성되는데, 이 중에서 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한 것은 '중요사항 약관'이다.

5. 다음 중 신·구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① 구약관(구증권)은 본문약관, 이탤릭서체약관, 난외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.
② 신약관(신증권) 체제하에서는 적하보험 특별약관인 ICC만으로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, ICC의 조건에는 A/R, WA 그리고 FPA 조건이 있다.
③ 해상고유의 위험(perils of the sea)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침몰, 좌초, 전쟁, 충돌 등의 위험을 의미한다.
④ 신약관(신증권)은 Lloyd's SG Policy를 기본으로 1779년 제정된 약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.

[답: ①]
② 신약관의 적하보험약관은 ICC(A), ICC(B), ICC(C)이다.
③ 전쟁위험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다.
④ 구약관(구증권)을 말한다.

■ **783페이지: Topic 16 전에 Topic 15-1 신설 (♣개정내용 신설)**

Topic 15-1. 적하보험의 부가위험 및 특별약관, 항공적하약관

(1) 적하보험의 부가위험

① 부가위험의 개념
- 적하보험의 포괄담보(A/R 또는 A조건)가 아닌 경우 부가위험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포괄담보(A/R 또는 A)로 가입하여도 실무상 보상하지 않는 위험을 부가위험으로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부가위험의 종류

구분	파손	한습손 및 열손	누손/부족손	혼합손
대상상품	유리 요업제품	곡물류, 사료 유채류	유리병 의약품 액체화물	곡물과 광물의 혼적 등
손해의 유형	파손에 의한 손해	습기와 열에 의한 손해	용기나 포장으로 부터의 누손손해	혼합에 의한 외견상 더러움 등
특징	A/R이나 A조건에서도 면책이므로 부가위험 특약으로 가입해야 함			

③ 기타의 부가위험
- 우담수손(Rain and/or Fresh water damage;RFWD): 빗물이나 담수에 의한 손해
- 도난발하불착손(Theft, Pilferage, Non-delivery;TPND): 도난과 불착으로 인한 손해

- 곡손(Denting & Bending): 운송 중 충격으로 화물의 표면이 구부러지는 등의 손해
- 갈고리손(Hook & Hole): 하역작업시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한 손해
- 투하 및 갑판유실(Jettison & Washing Overboard;JWOB): 공동해손이 아닌 투하나 갑판유실로 인한 손해
- 오염손(Contamination): 해수나 담수로 인해 유류 등의 품질저하 손해
- 쥐 및 벌레손(Rats & Vermin): 쥐나 벌레에 의한 곡물이나 목재의 손해

[예제 신설]

1. 유리나 요업제품을 실무적으로 ICC(A/R) 또는 ICC(A)에서 담보하지 않는데, 이때 (　　)의 부가위험약관을 첨부해야 한다.

답: 파손(Breakage)

2. 곡물류나 사료 및 유채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써, 선창내부와 외부와의 기온차이로 수분응결이 생겨 화물이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(　　) 부가위험약관을 첨부해야 한다.

답: 한습손 및 열손(Sweet & Heating)

3. 유리병에 들어있는 의약품과 같이 용기가 파손되거나 포장이 깨져서 내용품이 새어 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(　　) 부가위험약관을 첨부해야 한다.

답: 누손/부족손(Leakage &/or Shortage)

[보충문제 신설]

4. 곡물류의 화물운송에 주로 이용되는 부가위험은?

① Breakage
② Sweat & Heating
③ Leakage &/or Shortage
④ Contamination

[답: ②]

Breakage-유리 또는 요업제품, Sweat & Heating-곡물류, 사료 및 유채류
Leakage &/or Shortage-유리병에 들어있는 의약품, 액체화물 등
Contamination-혼합물(예: 곡물이 광석류와 혼적되어 혼합되는 경우 등).

(2) 적하보험의 특별약관

① **원산지손해약관(Country Damage Clause)**
- 수입면화의 원산지손해를 담보하는 약관
- 선적을 위한 대기 중 원산지에서의 비나 습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손해를 원산지손해라 한다.
- 선적과정에서의 명백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.

② **기계류수선특별약관(Special Replacement Clause)**
- 보험목적물인 기계의 일부손상시 대체비용을 보상하는 약관
- 수리를 위한 신규부품구입시 관세가 발생할 경우, 관세가 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.
- 기계가 중고품일 경우는 '중고기계수선특별약관(Special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)' 약관을 첨부한다.

③ **냉동기계약관(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)**
- 육류 및 생선에 첨부하는 약관
- 냉동기의 고장이나 파열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함

④ **냉동화물약관(Refrigerated Cargo Clause)**
- 24시간 이상 냉동장치가 고장일 경우에 보상한다.

⑤ **생동물약관(Livestock Clause)**
- 생동물의 사망을 담보하는 약관
- 검역소에서 30일 한도로 담보되며, 최종목적지의 수하주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리고 도착 후 7일 동안의 사망위험까지 담보한다.

⑥ **상표약관 (Label Clause)**
- 통조림이나 술 등 라벨이 붙은 화물에 첨부하는 약관
- 상표만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신상표 및 상표재부착비용만을 보상한다.

⑦ **통관거부위험약관(Rejection Clause)**
- 식품류에 첨부되는 약관
- 품질검사로 통관이 거부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함.
- 무사고로 통관이 될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환급함.

⑧ **갑판적약관(On-deck Clause)**
- 적하가 선창에 보관되지 않고 갑판에 적재된 경우 보험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.
- ICC(WA), ICC(A/R) 또는 ICC(B), ICC(A) 조건으로 가입한 계약에 적용되는데, 갑판에 적재될 경우 동약관에 의해 'FPA+JWOB'조건 또는 'C+WOB'조건으로 변경된다.
- 동약관은 밀폐된 컨테이너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[예제 신설]

1. 수입면화의 원산지손해를 담보하는 약관은 Country Damage Clause인데, 원산지손해뿐 아니라 선적과정에서의 명백한 손해까지 보상한다. [O, X]

답: X (선적과정에서의 명백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)

2. 냉동화물약관(Refrigerated Cargo Clause)은 냉동장치가 (　　) 이상 고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.

답: 24시간

3. 생동물약관(Livestock Clause)은 생동물의 사망을 담보하는데, 검역소에서 (　　) 한도로 담보하며 도착 후 (　　) 동안의 사망위험까지 담보한다.

답: 30일, 7일

4. 상표약관(Label Clause)은 신상표나 상표재부착비용을 보상하는 약관인데, 내부 품질의 손상이 없다면 상표부착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. [O, X]

답: X (내부 품질손상이 없어도 상표손상이 있다면 상표재부착비용 등을 보상한다)

5. 통관거부위험약관(Rejection Clause)은 (　　)에 첨부되는 약관이다.

답: 식품류

6. ICC(A)로 가입한 적하보험에서 적하가 갑판에 적재된다면 갑판적약관(On-deck Clause)에 의해 ( )조건으로 변경되며, ICC(A/R)로 가입한 경우는 ( )조건으로 변경된다.

답: C+W.O.B / FPA+J.W.O.B

7. 갑판적표약관(On-deck Clause)은 밀폐된 컨테이너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[O, X]

답: O

[보충문제 신설]

1. 적하보험계약 체결시 화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첨부하게 되는 특별약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?

① 냉동육류, 어류 - Refrigerated Cargo Clause
② 원면 - Country Damage Clause
③ 액체 화공품 - Rejection Clause
④ 기계류 - Special Replacement Clause 포기약관(Waiver Clause)

[답: ③] 액체화공품 - Leakeage or Shortage

2. 빈칸에 알맞은 것은?

최소한 24시간 이상 계속된 냉동기기, 냉동장치 등의 교란 및 고장으로 인해 화물이 입은 멸실이나 손실을 확장담보받기 위해 냉동육류 및 냉동어획물과 같은 화물을 부보할 때 첨부하는 적하보험 특별약관은 ( )이다.

① Refrigerated Machinery Clause
② Refrigerated Cargo Clause
③ Special Replacement Clause
④ On-deck Clause

[답: ②] 냉동화물약관을 말한다.
① 냉동기관약관 ② 냉동화물약관 ③ 기계류수선특별약관 ④ 갑판적약관

5. ICC(A) 조건에 On-deck Clause가 첨부된다면, 밀폐형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이 보험자에게 통지없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경우 그 화물은 ICC(A) 조건에서 어떤 조건으로 변경되는가?

① ICC(B)
② ICC(B) including the risks of Jettison & Washing
③ ICC(C)
④ ICC(C) including the risks of Washing Overboard

[답: ④] 'ICC(C)+W.O.B'이다. 만일 ICC(A/R)이나 ICC(WA)로 가입하였다면 'FPA+J.W.O.B'조건으로 변경된다.

6. 다음 중 특수화물에 대한 적하보험 부보시에 첨부하여 사용하는 특별약관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상표약관(Label Clause)을 첨부한 경우에 약관상의 담보위험으로 인해 운송 중 깡통이나 병의 상표만 손상을 입었고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다면 원상회복비용과 신상표 및 상표재부착비용은 담보되지 않는다.
② 통관거부위험담보약관(Rejection Clause)은 주로 식품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이다.
③ 원산지손해약관(Country Damage Clause)은 수입면화의 원산지손해를 담보하는 특별약관인데, 외항선에 적재될 때의 명백한 손해까지를 확장담보하는 것은 아니다.
④ 생동물약관(Livestock Clause)은 생동물의 사망을 담보하는 약관으로써, 검역소에서 30일을 한도로 담보되며 최종목적지의 수하주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리고 도착 후 7일 동안의 사망위험까지 담보된다.

[답: ①] 신상표 및 상표재부착비용만을 보상한다.

(3) 항공적하약관

① 항공으로 운송되는 적하보험 기본약관은 ICC(A/R), ICC(A)의 두 가지이다.

A/R 조건	A조건
Institute Air Cargo(A/R, 1965)[주1]	Institute Air Cargo(A, 1982)[주2]

*주1: 구협회항공회물약관, ICC(Air, 1965)
*주2: 신협회항공화물약관, ICC(Air, 1982)

② 보험기간 비교
⑴ 협회적하약관: 최종양하항에서 양하가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
⑵ 협회항공화물약관: 항공기에서 하역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

[보충문제 신설]

1. 빈칸에 알맞은 것은? (차례대로)

1982년 제정된 신협회적하약관 ICC(A) 및 신협회항공화물약관 ICC(Air)의 운송조항(Transit Clause)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, 최종양하장소에서 외항선 및 항공기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하가 완료된 후 ICC(A)는 (　　)이 경과한 때에, ICC(Air)는 (　　)이 경과한 때에 보험기간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① 60일, 60일
② 60일, 30일
③ 30일, 30일
④ 30일, 60일

[답: ②] '60일-30일'이다. 항공화물약관의 보험기간이 더 짧다. 참고로 ICC(A)의 '최종양하항에서 양하가 완료된 후 60일'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30일을 적용하고 있다.

■ **797페이지: 이해더하기 – 일부내용 삭제 (♣개정으로 인한 범위 제외)**

[이해더하기] 선박보험약관-협회기간약관(　　) 제18조~제22조

~~(1) 제18조 미수리손상약관(Unrepaired Damage)~~
~~① 정상적인 보험기능은~~~~~.~~
~~② 미수리손상의 보상한도: ~~.~~
~~③ 만일 미수리된 상태에서~~.~~

(2) 제19조 추정전손약관(　　)
(이하 동일)

■ 801페이지: Topic 23 전에 Topic 22-1 신설 (♣개정내용 신설)

Topic 22-1. ITC-Hulls(1/10/83) 선체보험의 특별약관

(1) '협회추가위험담보' 약관

① ITC-Hulls(1983)에 첨부하여 사용한다.

② 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아래의 사항(㉠, ㉡)을 확장담보함.

㉠ 수리비용이나 대체비용

- 파열된 보일러 또는 파열된 차축의 수리비용이나 대체비용
-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[주1] 여하한 결함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대체비용

*주1: ITC-Hulls(1983)의 6.2.2항에서 담보하는 사유를 원인으로 함. 6.2.2항은 '보일러의 파열, shaft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인 하자'를 말함

㉡ 여하한 사고 또는 여하한 관계인의 과오, 무능력 또는 판단착오에 의해 야기되는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

③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여하한 부분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
④ 보상의 단서조항

약관에서 담보하는 사항은 '선주[주2] 또는 선박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결여하고 있었던 결과로 위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'을 단서로 한다.

→동 약관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'상당한 주의의무의 이행'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.

*주2: 선장, 고급선원,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는 이 선박의 지분이 있어도 해석상 선주로 간주하지 않는다.

⑤ 동 약관의 의미

⑴ ITC-Hulls(1983) 6조 Perils조항은 '파열된 보일러, 파열된 차축, 기계나 선체의 잠재하자부분으로 인한 결과손'을 보상하고 그 자체손해나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
⑵ 따라서 파열된 보일러 등의 자체손해나 교체비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 약관을 첨부해야 한다.

⑶ ITC-Hulls(1983) 6조 Perils조항은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이지만, 동 약관은 포괄책임주의이다(∵'여하한'위험을 담보하므로).

[예제 신설]

1. 협회추가위험담보약관은 ( )에 첨부하여 사용한다.

답: ITC-Hulls(1983)

2. ITC-Hulls(1983) 6조 Perils조항은 '파열된 보일러, 파열된 차축, 기계나 선체의 잠재하자부분으로 인한 결과손'을 보상하고 그 자체손해나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므로, 파열된 보일러 등의 자체손해가 교체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( )을 첨부해야 한다.

답: 엽외추가위험담보약관 (선체보험의 특별약관이다)

3. 동 약관은 ITC-Hulls(1983) 6조 Perils조항에서 담보하는 사유로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이 야기되었다면, 이로 인한 여하한 부분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한다. [O, X]

답: O (기본약관에서 담보하는 사유로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이 야기되었다면, 이로 인한 어떠한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도 보상한다-포괄책임주의).

4. 동 약관은 ITC-Hulls(1983) 6조 Perils조항에서 담보하는 사유 여부를 떠나,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이 야기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여하한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 [O, X]

답: O

5. 동 약관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이 '선주 또는 선박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면, 이는 동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. [O, X]

답: O (동 약관은 상당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보상한다)

[보충문제 신설]

1. 1983년 협회기간약관-선박(ITC-Hulls)에 첨부하여 사용하는 특별약관인 '협회추가위험담보 약관'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?

① 파열된 기관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
②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시키지 않은 결함부분의 대체비용
③ 여하한 관계인의 과오, 무능력 또는 판단착오에 의해 야기된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
④ 여하한 사고로 인한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

[답: ②]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시키지 않는 결함부분의 수리비용이나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
2. 선박보험 ITC-Hulls(1983)에 첨부하여 사용하는 특별약관인 '협회추가위험담보 약관'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① 파열된 보일러의 파손된 shaft 및 결함부분이 선박에 손상을 입힐 때 결과손해뿐 아니라 자체손해 및 결합부분도 보상한다.
② 비록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히 발견된 shaft의 결함도 보상된다.
③ ITC(1/10/83) 6조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동 약관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.
④ 동 약관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인 선주 또는 관리인의 상당주의의무를 조건으로 어떠한 우연적인 사고, 부주의, 무능력 또는 판단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 목적물의 과실 또는 손상을 담보하는 것이다.

[답: ②]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여하한 결함부분의 수리비용이나 대체비용을 보상한다.

(2) '기계류손상추가면책금액' 약관

① ITC-Hulls(1983)에 첨부하여 사용한다.

② 아래의 경우 면책금액을 적용하는 약관이다(보험금 지급시 동 약관에 해당하는 면책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을 의미함).

⑴ 기계류, 차축, 전기장비, 배선, 기관, 콘덴서 등의 멸실 또는 손상이,

⑵ ITC-Hulls(1983) 제6조 Perils조항의 6.2.2~6.2.5항에[주1] 열거된 위험에 기인하거나, 또한 기계류공간에 생긴 화재나 폭발에 기인한 것이라면,

⑶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금액을 적용한다.

*주1: 협회선박보험(1983)의 기본약관 6조 Perils조항에서,
6.2.2: 보일러의 파열, shaft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박의 잠재적 하자
6.2.3: 선장, 고급선원,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
6.2.4: 수리자 또는 용선자 과실, 다만 수리자 또는 용선자가 이 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제외
6.2.5: 선장, 고급선원, 보통선원의 악행

③ 동 약관상 면책금액을 적용한 후의 손해액에 대해서는, ITC-Hulls(1983)의 '면책약관'을 적용한다.

④ 동 약관은 전손이나 추정전손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[예제 신설]

1. 동 약관은 기계류나 차축, 전기장비 등의 멸실 또는 손상이 동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면,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시 사전에 정한 면책금액을 적용한다. [O, X]

답: O

2. 동 약관의 적용으로 동 약관에서 정한 면책금액을 제외한 차액의 손해액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면책을 하지 않는다. [O, X]

답: X (동약관 적용 후에 '면책약관'이 추가로 적용된다. 면책약관은 ITC-Hulls(1983)의 특별약관으로 가입할 수 있음).

3. 동 약관은 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[O, X]

답: O

[보충문제 신설]

1. ITC-Hulls(1983)에 첨부하는 기계류손상추가면책금액약관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① 기계류, 차축, 전기장비 등이 ITC-Hulls(1983)의 6조 위험조항 중 동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, 손해액에 대해 면책금액을 적용한다.
② 기계류, 차축, 전기장비 등이 기계류공간에 생긴 화재나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동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.
③ 동약관을 적용하여 면책금액을 제외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ITC-Hulls(1983)의 면책약관을 적용한다.
④ 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.

[답: ②] 기계류공간에 생긴 화재나 폭발에 의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도 동약관이 적용된다.

■ **801~803페이지: Topic 23. 국제선박보험약관(IHC2003)** →**내용 전체삭제 (♣개정으로 범위 제외)**

※ IHC(2003)의 전체내용이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,
시험비중이 높은 ITC(1983)약관과 IHC(2003)약관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, 학습에 참고하시길 바람.

■ **833페이지: 실전예상문제 13번** →**삭제 (♣개정으로 범위 제외)**

----------"끝"----------